

1. 개정이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채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1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805호, 2022. 5. 11. 공포 및 시행) 개정에 따른 대부 관련 서식의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분할 및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6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던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함

나. 대부 신청 조문 신설 및 서식 정비(안 제13조의3, 제14조, 제20조 및 별지 제39호, 제40호, 제41호서식)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서식을 준용하던 것을 개별 서식으로 신청하도록 관련 조문 신설 및 민원24 홈페이지 이용 안내 삭제 등 문구 정비
다. 이자가산 등 환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안 제17조의3 및 별지 제46호의4 서식 신설)

라.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보훈특별고용 관련 서식 정비
(별지 제9호, 제30호 서식)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를 “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상속인”을 “상속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청인이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를 “등본(신청인이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을 “이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산상속인”을 “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본문 중 “등본의 내용(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이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를 “등본(신청인이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예”를 “이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을 첨부하여”를 “포함한다)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급방법을 변경하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1통을 첨부하여”를 “포함한다)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대부 신청) 영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대부금 지급 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하고,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1통”을 “1부”로, 같은 항 제7호나목 중 “으로”를 “을 통하여”로, “없고,”를 “없는 경우로서 해당서류를”로, “1통”을 “1부”로, 같은 항 제7호다목 중 “구비서류”를 “구비서류 1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하고,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을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으로 하며,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를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다목 중 “만”을 각각 “의 경우만”으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81조제6항에 따라 환수금분할납

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조직법 제35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40호, 제41호 서식의 개정규정 중 “국가보훈부장관”은 법률 제1922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본다.

국가보훈등록증 (제18조제1항 관련)

(앞면)



국가보훈등록증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소)
(경합 등록사항)



(발행연월일)

국가보훈부장관 **직인**

(뒷면)



국가보훈부

▶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 국공립 고궁·능원, 국공립 공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감면: 국공립 공연장(대관 공연은 제외), 국공립 체육시설

QR

세부내용
QR참조

- ※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보훈상담센터 : ☎ 1577-0606

- (주) 1. 앞면 상단의 “(국가보훈대상자 구분)”에는 ① 보훈보상대상자, ②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③ 보훈대상자, ④ 보훈대상자 유족으로 기재한다.
- 이 경우 보훈대상자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을 말한다.
2. 앞면 하단의 “(경합 등록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구분)” 또는 “(대상구분)”에 기재되는 보훈등록 사항 이외 경합 등록된 내용을 기재한다.
- 경합 등록사항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는다.
3. 고궁·공원 등 감면 대상 국공립 시설물 및 감면비율의 세부내용은 뒷면 Q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앞면과 뒷면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미세문자, 색변환 잉크, 형광, 레인보우인쇄, 선화인쇄 등의 디자인 기술을 적용한다.

86mm×54mm[폴리염화비닐(PVC) 980.4g/m²]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대상구분		보훈번호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협의자	1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2	주소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3			(서명 또는 인)				
		주소						
	4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5	주소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본인들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위의 사람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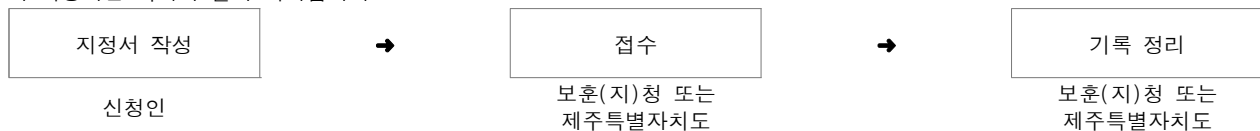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협의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상금 수급자 지정 방법	1.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순위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순위에 따릅니다. 2.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② 25세 미만 자녀(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 이상인 경우에도 25세 미만 자녀의 예에 따름)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3.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 지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협의 지정자와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가 보상금을 받을 유족인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 지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협의 지정자와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4.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지정방법 중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합니다. 나. 같은 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합니다. 다. 외국에 거주중인 유족이 있는 등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자가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및 협의자의 날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이 지정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지급구분	[] 계좌입금	금융기관명	
	[] 압류방지 전용계좌(호국보훈지킴이) 입금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 현금지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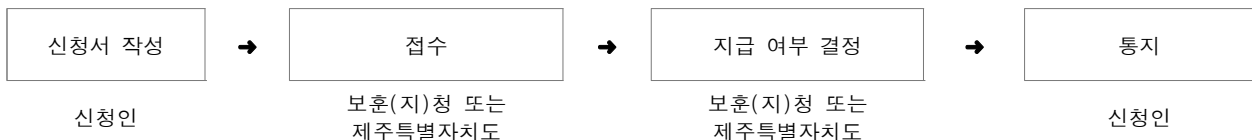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보훈번호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부양의무자 ¹⁾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거 여부
			-		
			-		
			-		
			-		
			-		
신청내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6. 자동차등록증 27. 차상위계층확인서 28.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2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0. 자활근로자확인서 31. 임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3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본인 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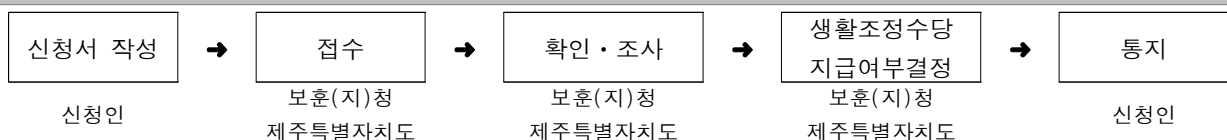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 사망일시금

[]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던 사람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구분		[]사망 []행방불명		신상변동일				
신청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던 사람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보훈급여금 미지급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통)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로서 장례를 행한 사람만 제출합니다.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로서 장례를 행한 사람만 제출합니다.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사망일시금 또는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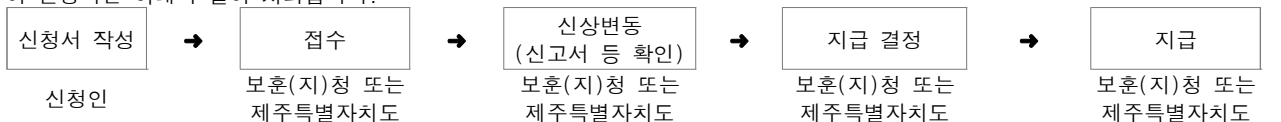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지급받을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	☐ 보훈급여금		☐ 학습보조비
	☐ 능력개발 장려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기타()		
지급구분	☐ 계좌입금		금융기관명
	☐ 압류방지 전용계좌(호국보훈지킴이) 입금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 현금지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지급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	----------------------------	---	----------------------------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변경구분	☐ 예금계좌 변경		금융기관명
	☐ 계좌입금으로 변경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 압류금지 전용계좌(호국보훈지킴이)로 변경		
	☐ 현금지급으로 변경		
변경지급 희망시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변경사항 승인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지급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신청사유	대리수령인 지정기간	월부터 (월간) 월까지
대리 수령인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 호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대리수령 지정기간 월부터 월까지(월간)		
대리 수령인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국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며느리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접수



승인여부
검토 및 결재



승인여부
통지

신청인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취업지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선정 대상자 (합격자)	보훈 번호	보훈보상대상자 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비고
	계	명			

※ 고용해야 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선정대상자가 없는 경우 포함) 미선정 또는 불합격 사유를 별도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대부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대부 신청	대부종류 [] 주택구입 [] 주택신축 [] 주택임차 [] 주택개량 [] 농토구입 [] 사업 [] 생활안정 [] 대지구입						
	희망금액 만원			담보 [] 부동산 [] 보훈급여금 [] 신용 [] 기타			
주거상황	거주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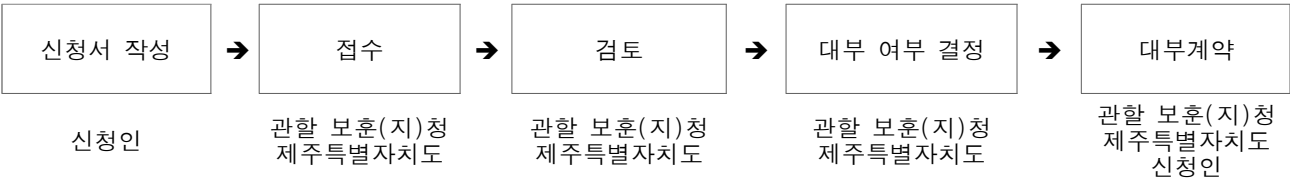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대부금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신청종류	대부종류	대부금	
	대부금 사용목적	본인부담금	
	담보	[] 부동산 [] 보훈급여금 [] 신용 [] 기타	
부동산 담보내역	소재지(지목, 면적)	현재 시가	
연대 보증인	성명	전화번호	
	보증구분 [] 재산 [] 소득 [] 직업 [] 기타	보증내역(직장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4.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사업대부: 사업계획서,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채무자	대부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연대 보증인 1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연대 보증인 2	성명	생년월일(성별) ()	
	주소	전화번호	
대부내용	대부일	대부금액 원	
	거치기간 부터 까지	상환기간 부터 까지	
	상환원금 원	미상환원금 원	
	체납원금 원	체납이자 원	
연장신청	기간 부터 까지(일간)		
	※ 연장 기간은 총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사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환수금 분할 신청 내용	총 환수금액	일시납부 금액	분할납부 신청 금액	분할납부 횟수	월 납입일
	원	원	원	회	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6항 각 호 외의 후단 부분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의	의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작성방법

가.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①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①총 환수금액 = ②일시납부 금액 + ③분할 납부 신청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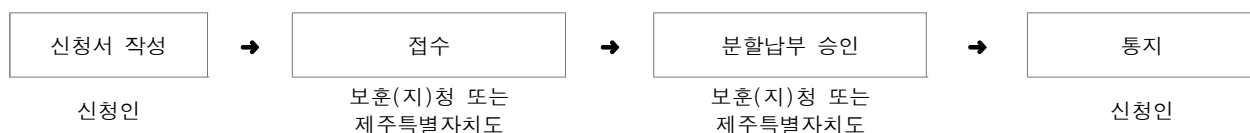
나. 환수금 분할 신청내용의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 반납해야 할 금액이 ①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②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③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후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제8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상금 등 분할 지급 <u>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예금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u>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u><신 설></u>	제6조의2(보훈보상대상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 ----- ----- ----- 신청서를 ----- ----- ----- ----- -----. <u>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u>
제8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	제8조(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① ----- ----- -----

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출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 상속인 -----

3. (현행과 같음)

②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 등본(신청인이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 ----

제9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① 영 제26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생략)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이에 ---.

제9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①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상속인 -----

2. (현행과 같음)

② -----

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보
 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
 여 유족이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하
 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영 제27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
 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3호
 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
 본(예금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을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등
 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보

----- 등본(신청인이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
 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
 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
 -----.

----- 이에 -----
 --- 해야 -----.

제10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① -----

 ----- 포
 함한다)를 -----

 ----- 제출해야
 한다.

② -----

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또는 예
 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
 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을 말한다) 사본(예금계좌를 이
 용하는 방법으로 지급방법을 변
 경하거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1통을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
 29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
 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
 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 포함한다)를 -----

 -----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
 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
 도록 해야 한다.

제11조(대리수령인의 지정) -----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제14조(대부금 지급 신청)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

----- 제출해야 -----
--.

1.·2.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대부 신청) 영 제69조 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주택증명서류(주택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대부금 지급 신청) ① ---

----- 대부금 지급 신청서 -----

----- 서류 -----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
본 1통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
본 1통

3. 주택신축대부 :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4.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
본 1통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7.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
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구비서
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
청장에게 제출해야 -----.

1. -----
-- 1부

2. -----
-- 1부

3. -----
-- 1부

4. -----
----- 1부

5. -----
----- 1부

6. -----
-- 1부

7. -----

가. ----- 1부

나. -----
-----을 통
하여-----없는 경우로
서 해당서류를-----
----- 1부

다. -----
-----구비서
료 1부

② -----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 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만 해당한다)
 - 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만 해당한다)
 -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3. ~ 6. (생략)
- <신 설>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 확인해야 ----- . --
-----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가. (현행과 같음)
 - 나. -----
-----의 경우만-----
 - 다. -----
의 경우만-----
 - 라.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영 제81조제6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u>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제20조(서식)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및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되지 <u>아니한</u>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20조(서식) ----- ----- ----- ----- <u>않은</u> ----- -----.
1. ~ 23. (생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u>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u>	<u><삭 제></u>
25. ~ 26. (생략)	25. ~ 26. (현행과 같음)